

2026 강원대학교병원 계약특수조건

「환자 피복류, 침구류, 방포류 구매」

강원대학교병원(이하“병원”이라 한다)과 계약상대자는 “강원대학교병원 환자 피복류, 침구류, 방포류 구매(연간 단가계약)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

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사용할 환자 피복류 12종, 침구류 13종, 방포류 17종(이하 “물품”이라 한다)의 우수한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납품 지시한 물량에 대하여는 최종 납기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- ③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,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소요 물량 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납품요청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조건의 확인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병원의 소관부서로부터 수량, 규격, 납품 장소 등 물품 납품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병원의 소관부서로부터 물품 제작에 사용할 원단에

대하여 병원과 확인된 원단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시제품 제출)

-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, 제출하여 병원의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의 제작 및 납품을 개시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시제품 제작 지시를 받은 후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조(품질의 보증)

- ① 납품된 제품 및 규격은 제시된 사양을 엄수하며 견본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.
- ② 제품의 나염 상태는 최초 납품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, 원단과 색상은 최초 샘플과 동일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용 원단의 검사 시험 요구가 있을 시 병원이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병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검사 결과를 위한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제 6 조(납품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사양서와 동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.
- ② 품목별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,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병원과 협의하고, 병원의 요청대로 제작·납품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수량조절)

물품내역서상의 수량은 계약기간 중 예상발주 수량으로,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납품단가는 물품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한다. 계약상대자는 발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8 조(납품기간 및 지체상금)

본원의 유선발주 또는 전자발주 후 최소 14일(10일 이내)에서 최대 30일 이내 (100일 이상)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계약자는 계약 후 초기 대량 발주 시에는 120일 이내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.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1,000분 0.75의 지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. 지체상금은 병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 9 조(책임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- ① 천재지변, 화재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
- ② 국가비상사태,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발생한 장애
- ③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
- ④ 병원이 인정하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

제 10 조(납품 장소 및 완료)

- ① 계약대상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병원의 관리부서(중앙공급실)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, 수선 시에도 취합하여 관리부서(중앙공급실)에 납품 배송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납기일은 제 8조에 명시된 납품기간(공휴일 또는 병원의 휴무일이 납기인 경우 익일을 납기일로 한다.)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“물품”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발송과정에서 분실,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 전량을 재납품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검사)

-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납품 검사를 신청하며, 검수자의 검수,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납품된 것으로 한다.
- ② 물품의 검수는 본원에서 실시하며, 검수 혹은 납품 완료 후 물품의 규격과 품질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반품 및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 이에

따르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.

제 12 조(하자처리)

- ①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A/S 요청 후 7일(영업일 기준)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, A/S기간은 물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봉제불량
 - 나. 원단불량(제작불량, 세탁 후 변색·탈색·수축 등)
 - 다. 부자재 불량(단추, 심지 등)
 - 라. 치수(사이즈)의 부정확
 - 마. 부당표시(미표시 및 부실표시)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
- ③ 하자를 처리함에 있어 수선이 가능할 경우 수선을 우선으로 하며, 수선 하여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.

제 13 조(대금의 지급)

대금 지급은 강원대학교병원 대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1개월 단위로 후불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주문 제작한 물품대금을 일시납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- 증빙서류를 병원에 송부 및 승인 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대금 지급

제 14 조(계약금액의 감액·환수)

- ① 병원은 물품의 납품과 관련 납품 대금 청구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종료 후라도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병원은 계약 이행 완료 후 ①항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. 이 때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해당

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으며, 병원의 정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할 수 있다.

제 15 조(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내 해약)

병원은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(재정경제부예규 제32호, 2026. 1. 2., 일부개정, 재개정시 계약체결 시점 최신의 것을 따름) 각 호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가. 계약상대자가 병원이 요구한 물품을 지연시켜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
- 나.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명백한 결함으로 인하여 병원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. 타 업체의 단가와 비교하여 계약상대자의 단가가 현저히 높다고 병원이 판단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
- 라. 계약대상자가 병원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을 위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
- 마.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
- 바.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본 특수조건에 따라 시정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 16 조(계약 상대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)

계약상대자의 주소, 상호, 대표자, 영업목적,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영업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, 병원의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그러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17 조(기밀보장 등)

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병원의 권리·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8 조(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)

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·승계·하도급·담보 및 위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19 조(기타사항)

- ① 위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에 상호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.
- ②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및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.
- ③ 병원은 제 12조 각 호에 의한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이전이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한 납품을 받을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④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(재정경제부예규 제32호, 2026. 1. 2., 일부개정, 재개정시 계약체결 시점 최신의 것을 따름)은 계약서에 같이 첨부 또는 날인하지 않아도 해당 계약의 일부가 되나, 분쟁에 따른 해석 시 상호보완기능을 발휘하여 본 특수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.
- ⑤ 본 계약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, 해당 사항에 한하여 그 효력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령의 조문 및 본문, 주석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유추 또는 확장 해석에 의한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⑥ 하자발생에 따른 치유 및 계약 해지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가. 납품기일 미준수, 납품검사 불합격, 납품 물품의 제작상 오류 등 계약이행상의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, 이는 계약이행의 하자로 간주한다. 이 경우 병원은 하자 1건 또는 각 하자별로 문서번호가 별도로 부여된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명요청 또는 소명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총 3회째 송부된 문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날을 초일로 하여 7일째 되는 날 24:00까지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보완 및 보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 계약상대자가 위 기한 내에 합리적인 보완 및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, 병원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일방 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또한 병원이 승인한 보완 및 보상 방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기한의 도과 즉시 병원은 일방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이행보증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.

나. 납품 지시에 대한 불응, 사전 승인 없는 원단 변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, 병원은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1회의 소명요청을 할 수 있다.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명요청 문서가 도달한 날을 초일로 하여 7일째 되는 날 24:00까지 합리적인 보완 및 보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은 별도의 최고 없이 일방 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병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또한 병원이 승인한 보완 및 보상 방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기한의 도과 즉시 병원은 일방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이행보증금 환수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.

다. 경미 또는 중대한 하자의 판단 및 합리적인 보완 및 보상 사항에 대하여서는

병원이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- 라. 소명요청의 도달 시점은 병원의 해당 과업 담당자가 보내는 공문을 첨부한 이메일의 발송일 또는 등기우편(혹은 내용증명 우편)의 경우 도착지 우편배달인이 최초 배달을 시도한 날로 본다.
- 마. 계약상대자가 보완 및 보상의 이행을 위한 기간 협의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우, 병원은 14일 이상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지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. 계약상대자는 위 통보 문서가 도달한 날을 초일로 하여 7일째 되는 날 24:00까지 해당 이행 기간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은 별도의 최고 없이 일방 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병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본 항에 따른 통보 문서의 도달 시점은 라.항을 준용한다.
- 바. 소명 및 하자치유를 위한 보완 및 보상사항의 제출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나, 계약상대자의 공식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분쟁의 해결)

- ① 물품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 해결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소송 시에는 해당 법원은 병원의 관할지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.